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436 발의연월일: 2021. 7. 9.

발 의 자: 김예지·김석기·김선교

김승수 · 김용판 · 김 웅

이 용・이용호・이종배

장제원 · 홍석준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·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실시한 '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'결과에 따르면, 장애예술인 중 예술활동의 공공·민간지원을 받은 경험은 38%에 불과하며, 예술정책에 대한전반적인 만족도는 47.7점(100점 만점)에 그치고 있음. 이처럼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인바,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·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문화예술 창작

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 단체로 하여금 창작물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(안 제9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창작물 구매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공예품, 공연 등의 문화예술 창작물(이하이 조에서 "창작물"이라 한다)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창작물의 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
- 2. 창작물 공동구매의 알선 사업
- 3. 창작물의 유통거래 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
- 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창작물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9조의2(장애예술인 문화예술
	<u>창작물 구매) ① 국가와 지방</u>
	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생산
	하는 공예품, 공연 등의 문화예
	술 창작물(이하 이 조에서 "창
	작물"이라 한다) 구매를 촉진
	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
	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
	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
	1. 창작물의 홍보 활성화를 위
	<u>한 사업</u>
	2. 창작물 공동구매의 알선 사
	<u>업</u>
	3. 창작물의 유통거래 질서 건
	전화를 위한 사업
	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그
	밖의 공공단체는 창작물의 우
	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런
	하여야 한다.